

화태대교 부근 수역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에 대한 고찰

정대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핵심용어 : 화태대교, 좁은 수로, 최저승무기준, 음주운항, 굴곡부신호, 안전한 속력, 최대승선인원

1. 사건개요

1.1 화태대교 부근 수역

화태대교 주 교각(7번과 8번) 사이의 가항수로 폭은 교각 우물통의 지름을 고려할 때 469m이다. 그리고 화태대교의 교각 6번과 7번 사이와 교각 8번과 9번 사이의 가항수로 폭은 각각 166.7m 및 165.7m이다. 화태대교의 공사기간 중에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주 교각의 전후에 교각 안쪽으로 50m 위치하도록 공사용 등부표 4기를 설치하여 가항수로 폭 400m를 확보해 주어 선박이 공사용 등부표 사이를 통항하도록 하였고, 사고당시(2015년 4월 11일) 이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당시 화태대교는 교각과 교각 사이의 상관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해상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1.2 사건개요

화물선 99보명호(총톤수 40톤, 길이 22.99m)는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이 직접 조선하여 운항하며 2015. 4. 11. 06:00경 군내선착장을 출항하여 신기항을 거쳐 같은 날 07:00경 여천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6:30경 건축 폐기물 약 10톤을 적재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적재한 후 여천항을 출항하여 군내선착장으로 향하였다.

기관장은 이 선박의 타를 수동으로 잡고 조선하였고,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6~7노트로 항해하여 화태대교의 좌현 쪽(교각 8번과 9번 사이)으로 통과하기 위해 화태도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였다. 기관장은 이 선박이 화태대교에 진입하기 전 정선수 좌현 약 20도 방향, 90~10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어선 제2수현호를 육안으로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렸으나, 2015. 4. 11. 17:03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화태대교 부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랩프 하부와 어선 제2수현호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하였다.

한편 어선 제2수현호(총톤수 1.18톤, 길이 6.54m)는 선장 가족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 운항하며 사고당일 17:02경 화태도 북서방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을 떠나 화태도 소재 치끝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화태도의 북쪽 연안을

따라 속력 약 22노트, 침로 약 125~130도로 항해하였고, 화태대교 우현 쪽(교각 8번과 9번 사이)을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화태대교 반대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99보명호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99보명호와 충돌하였다.

2. 원인고찰

2.1 항법 적용

사고 수역인 화태대교 부근 수역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좁은 수로항법”이 적용된다. 어선 제2수현호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20m 미만의 선박”에 해당된다. 99보명호는 이 선박의 조종특성, 조류의 세기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화태대교의 좌현 쪽으로 항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2.2 양 선박의 과실

1) 99보명호는 좁은 수로의 왼쪽을 따라 항행하며 좁은 수로항법을 위반하였고, 선장이 승무하지 않음으로써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기관장은 사고당시 비록 유효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기관장으로 승선공인한 후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이 선박이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선박은 화태대교의 굴곡부에 접근하면서 굴곡부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2) 제2수현호는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였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굴곡부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2명이었으나, 사고당시 4명이 승선하며 「어선법」상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개선 및 교훈사항

좁은 수로항법은 사전예방적인 차원의 항법으로서 충돌의 위험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하고,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과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규정, 음주운항금지규정 등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 중에서 승선공인을 통해 해당 선박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만 운항되어야 한다.

* 저자 : 종신회원, dyehong@korea.kr